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3. 28 선고 2017가단10333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8. 3. 14.

판결 선고2018. 3. 2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5. 31.부터 2008. 3. 15.까지 연 19%, 그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나. 피고 1.에 대한 청구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가. 피고 2.에 대한 청구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)

판사김수영

별지